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 - 375호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43호(2013.06.1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과 관련하여, 주소·거소 불분명 등으로 편입된 재산에 관한 이의재결서 정본을 통지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인) 및 영업권자 등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95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사업시행인가일 :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3-43호(2013.06.13.)
5. 공시송달 기간 : 2020. 03. 12. ~ 2020. 03. 28.까지(15일 이상)
6. 공 고 장 소 : 해당(소재지 관할) 시·군·구·동 게시판에 게시
7. 공고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연 번	소재지 (은평구)	지번	지목 또는 물건의 종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송달(최종)주소	사유
				토지			
1	증산동	193-35	대	216.7 X2/11	오진아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 성동구 사근동길 65 102동 1204호 (사근동, 하이츠아파트)	주소불명 등
2			지하실(지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2*6.2	50.84㎡ X2/11			
3			근린생활시설(1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0*9.2	128.80 ㎡ X2/11			
4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0*9.2	128.80 ㎡ X2/11			
5			주택(3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0*9.2	128.80 ㎡ X2/11			
6			옥탑(옥상층) 벽돌조/슬래브 2.4*8.0	19.20㎡ X2/11			
7			창고(1층) 조적조/스라브,목조/천막 6.3*1.9*2EA	23.94㎡ X2/11			
8			온실 샷시조/유리 2.0*5.0	10.00㎡ X2/11			
9			태양열집열판	1식 X2/11			
10			모과나무 40(R)Cm	3주 X2/11			
11			차양1 목조/천막 3.2*9.0	1식 X2/11			
12			차양2 강봉/천막 3.6*1.0	1식 X2/11			

8. 기 타

- 재결서 정본의 수령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2) 및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06-3001)로 문의바랍니다. 끝.

재 결 서

이 의 재 결 : 주 택 재 개 발 사 업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2019. 12. 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 결 서

사 건 번 호 : 19이지0704호

사 업 명 : 주택재개발사업[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이의신청인 : 강옥희 외 39명

사업시행자 : 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 결 일 : 2019. 12. 19.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을 각하한다.

이 유

1. 이의신청의 경위 및 적법성 판단

가. 이의신청의 경위

사업시행자는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중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이를 고시(은평구 고시 제2013-43호, 2013. 6. 13.)하였다.

사업시행자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인들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적법성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①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②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③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④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등 위 4개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효력을 상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인 토지에 대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 수용재결 보상금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용의 개시일(2019. 9. 20.)까지 지급하거나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6. 수용재결은 실효된 것으로 확인된 바,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법률상 실익이 없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어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중 앙 토 지 수 용 위 원 회

위 원 장
직무대행

허 용 석

위 원

정 경 훈

위 원

강 현 호

위 원

박 귀 경

위 원

박 해 식

위 원

유 병 권

위 원

한 숙 렬

위 정본입니다.

2019. 12. 19.

중 앙 토 지 수 용 위 원 회



간사 김 종





종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1차) 1901지0704
(이의1계/최진숙/2019.12.19.)

2026527104625 정부세종청사2우체국

조미영 귀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종산로17길 26 203호(신사동,명진아
파트)

03443